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도자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11월 30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11월 30일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11. 29.(월)	담당부서	에너지안전과
담당과장	홍순파 과장(044-203-3980)	담 당 자	이승준 사무관(044-203-3983) 임종채 사무관(044-203-3988) 배재형 사무관(044-203-3989)

‘반도체 제조 용도 등의 수입 산업가스’ 수급안정을 위한 규제개선 시행 등

–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」 등 에너지안전 관련 4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–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**반도체 제조 등 용도로 수입**되고 있는 **특수 산업가스의 국내수급안정**을 위해 개정 추진중인,

○ **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에너지안전법」 시행령 개정안**이 **‘21.11.30(화) 국무회의**에서 **의결**되었다고 밝혔다.

□ 동 개정안은, 정부가 발표한 **반도체 강국** 실현을 위한 **「K-반도체 전략**(’21.5.13)**」중 규제개선 사항의 일환** 등으로 추진되었다.

○ **(현황)**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상 **모든 고압가스 용기**는 안전확인을 목적으로 **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은 후 수입**되는 것이 원칙인데,

- 예외적으로 **고압가스를 담아서 국내로 수입되는 고압가스용기**는 **6개월 내에 해외로 반송**하는 조건하에 **해당 용기 검사를 면제**하고 있다.

○ **(문제점) 최근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비축량 증가**와 반도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*가 소량 사용의 특징으로 **평균 사용기간이 약 2년 정도로 장기 사용**되고 있어서, **6개월 내에 수입용기 반송이 곤란**한 상황이 지속되어 업계는 애로를 호소하였다.

* 디플루오로메탄(CH_2F_2, 반도체 식각용), 삼불화붕소(BF_3, 반도체 도핑용) 가스 등

○ **(개선)** 산업통상자원부는 **산업계의 현실**을 고려하여,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」을 개정하여 검사생략 고압용기의 **반송기한을 "현행 6개월 → 최대 2년"으로 연장**을 허용하였다.

- 다만, 반송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**안전성확인도 강화**할 필요가 있으므로, 용기검사 면제 조건에 **"신뢰성 있는 외국의 검사기관*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용기"**에 한하도록 제한하였다.

* 미국(DOT기준, DOT 인증기관), 유럽(TPED기준, 인증기관), 일본(고압가스보안법, 보안협회) 등

□ 그 밖에 **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」, 「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령」, 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」도 개정**되었는데,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**액화석유가스(LPG)를 사용**하는 학교, 영화관, 전통시장 등의 **다중이용시설**은 안전관리 중요성이 높아서 **특정사용시설로 지정**('20년 기준 : 221,002개소)하여 관리하고 있는데,

- 동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**안전검사결과 공개업무**를 가스안전관리의 전문기관인 **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위탁**하여, 일반인이 **가스시설의 안전성을 쉽게 확인**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검사결과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.

② 모든 송유관이 15년이 경과하여 장기 사용되고 있어서, 송유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장비와 기술을 활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도록 하는 **"송유관 정밀안전진단"제도가 '21.12.16일부터 시행**될 예정인데,

- 동 정밀진단결과에 따른 **개선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**에 대한 **과태료 부과 세부기준***을 **마련**하여, 송유관 안전사고예방 및 **정밀안전진단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**하였다.

* 과태료 부과 금액 : 1차(1,500만원) 2차(2,200만원) 3차(3,000만원)

③ **안전관리규정의 확인을 거부·방해·기피하는 자**에게 **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**를 부과하도록 「도시가스사업법」이 개정되어 **'21.12.16일부터 시행**됨에 따라,

- 위반 차수별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*을 마련하여 **안전관리규정 확인의 실효성을 제고**하였다.

* 과태료 부과 금액 : 1차(1,500만원) 2차(2,200만원) 3차(3,000만원)

□ 산업부는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, **산업용 수입가스의 국내수급안정**을 도모하여 **반도체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촉진**되고, 아울러 **국민의 에너지 생활 환경**이 더욱 **안전하게 조성** 될 것으로 기대하며,

○ 앞으로도 에너지안전과 관련한 **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안전제도에 보완**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이승준 사무관(☎ 044-203-398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**산업용 수입 가스 현황**

□ **주요 수입 산업가스** (반도체 공장 등 대규모 사업장 기준)

수입업체	가스종류	수입국가
A사	BF_3, C_2F_6, C_3F_8, CHF_3, SF_6, Cl_2, HCl 등	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등
B사	BF_3, PH_3, BCl_3, C_4F_8, C_2HF_5, Xe 등	
C사	BF_3, AsH_3, PH_3, GeF_4, CO, SiF_4, H_2 등	
D사	Xe/H_2, $B_{11}F_3/H_2$, B_2H_6/H_2, AsH_3, PH_3, Ne, Xe, Kr, HCl, CO_2, CF_4 등	
E사	CF_4, CHF_3, C_4F_8, CH_2F_2 등	
F사	C_2H_2, GeH_4, PH_3, AsH_3 등	
G사	CO 등	

※ 자료출처 : 한국특수가스협회('19년)